2024 부산대학교 대동제 '총장배 농구대회' 경기 규정집

<2024. 04. 10.(수) 작성본> <2024. 04. 15.(수) 수정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2024 부산대학교 총장배 농구대회 농구 종목의 경기 진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목명칭 및 대회명칭)

1. 종목명칭: 농구(Basketball)

2. 대회명칭: 2024학년도 부산대학교 총장배 농구대회

제3조 (운영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는 2024 대동제TF 스포츠·안전팀과 부산대학교 중앙동아리 JUMP 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스포츠·안전팀장으로 한다.

제4조 (의무)

1.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 대회가 원활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 대회 운영에 방해될 요소에 관해 사전에 합리적으로 심의하고 조치하도록 한다.

2. 참가자

본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회 운영사무국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대회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하고 운영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스포츠맨십을 바탕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규정)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대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규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의결정족수(운영위원회 과반수 찬성과 참가팀 주장의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규정 개정안은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지 못한다.

제6조 (예외)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관하여 결정이 필요한 경우 FIBA 규정집을 기본으로 따르며, 이에 대해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경우 아래 다음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① 경기 진행 중일 때

경기 진행 중일 때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관해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 대리가 현장 심판단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② 경기 진행 중이지 않을 때

경기 진행 중이지 않을 때 이 규정에 없는 내용에 관해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내용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2장 대회 참가

제7조 (참가자격)

- 1. 연령제한: 본 대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 2. 구성제한: 단일 동아리 내 2개의 팀까지 참가 허용하며, 복수 동아리 연합으로 참가팀을 구성할 수 없다.

(단일 동아리 내 2개팀 예시. JUMP A, JUMP B

복수 동아리 연합 예시. JUMP 단일 참가팀 O, JUMP-SBB 연합 참가팀 X)

- 3. 인원제한: 부산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유예학생 중 최소 6명, 최대 30명까지 구성가능하다. 단, 팀 구성원 중 재학생이 최소 1인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4. 자격제한: 대회의 취지를 고려하여 졸업생 제외한 부산대학교 학부 재·휴학생 및 졸업유예학생으로 한정하여 참가자격을 부여하며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 1) 농구 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자
 - 2) 3년 이내 진행된 부산대학교 총장배 농구대회에서 대회 진행을 방해한 자
- 5. 한 명이 2개의 팀으로 출전할 수 없다.

제8조 (엔트리 구성)

- 1. 사전 신청 시 제출한 명단 내에서 최소 6명부터 최대 12명까지 출전 선수 명단(이하 엔트리)를 구성할 수 있다.
- 2. 엔트리 제출 양식은 사전 미팅에서 공지한 양식을 따른다.

제9조 (참가자격 제한 검사시점)

1. 본인확인: 참가자는 경기 당일 사진이 부착된 실물/모바일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의 복사본 또는 사진 파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신분증 종류 □ 학생증(모바일 학생증 포함)1)

- 2. 검사시점 : 참가자는 경기 시작 30분 전에 장소에 모여 현장의 운영위원에게 엔트리를 제출해야 하며, 경기시작 시간 10분 후까지 경기 최소인원(5명)이 모이지 않는 경우 몰수패 처리 된다.
- 3. 검사 방법: 운영위원은 경기 시작 전 본인 여부 및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심판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한 출전 선수 명단은 수정할 수 없다.
- 4. 참가제한: '제7조 제4항 (참가자격)'에 의거하여 참가 자격 결격자는 상금, 상품, 참가사실, 표창, 훈격을 모두 무효 및 몰수 처리하고 해당 경기를 패배 처리한다.

¹⁾ 단, '부산대학교' 재·휴학생, 졸업유예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증이어야 한다.

제3장 경기 준비

제10조 (경기장 및 심판구성)

- 가. 경기장: 8강 및 4강 경기는 경암체육관에서, 이외 경기는 넉넉한 터에서 진행한다.
- 나. 심판구성: 심판구성은 점프 구성원 중 부산대학교 재학·졸업생으로, 각 경기는 2심제로 운영한다.

제11조 (경기 방식)

아래 구분에 따라 경기 방식을 달리하여 진행한다.

구분	경기 세트	방식
조별리그	4쿼터(7분)	4개 조 풀리그
12강	4쿼터(8분)	싱글 토너먼트
8강, 4강	4쿼터(8분)	싱글 토너먼트
3/4위전, 결승전	4쿼터(8분)	싱글 토너먼트

- 1. 조별리그는 4번째 쿼터에만 1분 골데드를, 이외 경기는 1번째~3번째 쿼터 때는 1분 그리고 4번째 쿼터 때는 2분 골데드를 진행한다.
- 2. 정규 시간(4쿼터) 내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2분 휴식 후 3분 연장전을 진행하며, 승부가 날 때까지 3분 연장전을 계속하여 진행한다.
- 3. 8강 진출은 조별리그 1등 팀 중 상위 4팀과 12강 승자 팀으로 한다.
- 4. 12강 진출 팀은 조별리그 1등 팀 중 상위 4팀에 들지 못한 1팀과 조별 리그 2등 팀, 조별리그 3등 팀 중 상위 2팀으로 한다.
- 5. 조별리그에서 승점이 동일한 팀이 있을 때는 진출 방식을 승자승, 득실차, 다득점, 페어플레이(파울 개수) 순으로 적용하여 진출 팀을 결정한다.
- 6. 다른 조와 점수를 비교할 시에는 진출 방식을 승점, 득실차, 다득점, 페어플레이(파울 개수) 순으로 적용하여 진출 팀을 결정한다.

제12조 (경기 설정)

- 가. 좌석 배치: 각 팀은 현장 심판단이 사전에 배정해둔 좌석에 착석해야 한다.
- 나. 작전 타임: 조별리그의 경우 전반 1번, 후반 1번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외 경기의 경우 전반 1번, 후반 2번 사용할 수 있다. 연장전을 진행하는 경우 게임당 작전타임 1번이 추가로 주어진다.
 - 다. 선수 득점: 득점에 관해선 보편적인 규칙을 준용하되 여성 선수 및 40대 이상(83년생이상) 참가자의 경우 기본 점수에 1점을 추가하여 득점한 것으로 인정한다.
 - 라. 출전 인원: 5인
 - 마. 경기 물품: 공인구(윌슨 WTB0540)로 경기를 진행한다.
 - 바. 세부 규정: '제6조 (예외)'에 의거하여 규정에 없는 내용을 결정할 때는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집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4장 경기 진행

제13조 (개인 장비)

가. 경기에 사용되는 경기 물품은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상태로 사용한다. 선수가 임의대로 다른 물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준비되지 않은 다른 장비 요구는 수용되지 않는다.

제14조 (의사소통)

- 1. 대회 운영에 피해(영향)를 주는 행위 또는 언행은 금지되며, 현장 심판단의 판단에 따라 퇴장 조치할 수 있다.
 - 2.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비방하는 행위, 심판에 대해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징계 조치한다.

제15조 (경기 중 이상 현상)

- 1. 이상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심판단이 경기를 중단하고 문제상황을 조치한 후 경기를 진행한다.
- 2. 기상 문제로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장 심판단이 경기 일정 연기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 조정 및 통보는 운영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16조 (이의 제기)

- 1. 경기 중 심판의 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출전 선수 명단에 포함된 주장과 감독만 경기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시점부터 경기를 중단해야 하며 현장 심판단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한 후 경기를 재개한다.
- 2. 운영위원회는 대회 진행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제외하고 경기 진행 전과 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받지 않으며, 대회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모든 진행은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5장 3on3 경기 진행

제17조 (선수 구성)

- 1. 3on3 선수는 부산대학교 대학원생으로 구성한다. 이때 와일드카드는 각 팀당 1장씩 사용 가능하다.
 - 2. 본 대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
 - 3.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 할 수 없다.
 - ① 농구 전반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 자
 - ② 3년 이내 진행된 부산대학교 총장배 농구대회에서 대회 진행을 방해한 자

제18조 (와일드카드)

- 1. 와일드카드는 각 팀당 1장씩 사용 가능하다.
- 2. 부산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생을 와일드카드로 사용 할 수 있다.
- 3. 와일드카드라 할지라도 제7조 제4항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9조 (참가 선수 검사)

- 1. 참가 선수의 본인확인 및 방법은 제8조 제1항과 제3항을 따른다.
- 2. 검사시점 : 참가자는 경기 시작 20분 전에 장소에 모여 현장의 운영위원에게 엔트리를 제출해야 하며, 경기시작 시간 10분 후까지 경기 최소인원(3명)이 모이지 않는 경우 몰수패처리 된다.
- 3. 참가제한: '제7조 (참가자격)'에 의거하여 참가 자격 결격자는 상금, 상품, 참가사실, 표창, 훈격을 모두 무효 및 몰수 처리하고 해당 경기를 패배 처리한다

제20조 (경기 진행)

- 1. 서로다른 4팀이 경기에 지원하지 않으면 경기는 진행되지 않는다.
- 2. 3on3 경기의 전반적인 규칙은 국제농구연맹(FIBA) 규정집의 내용을 따른다.
- 3. 경기는 리그전으로 진행되며 리그전 상위 2팀이 결승전을 진행한다. 이때 승점이 동일한 경우 승자승, 득실차, 다득점, 페어플레이(파울 개수) 순으로 적용하여 결승전 진출 팀을 결정한다.
- 4. 경기 시간 내에 승부가 나지 않는다면 정규 경기시간과 연장전 사이에 1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연장전을 진행하며, 먼저 2점을 득점하는 팀이 연장전에서 승리한다.

제6장 징계

제21조 (비 신사적 행위)

- 1. 경기 중 플레이어가 아닌 제3자의 행동이 대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현장 심판은 해당인에 대하여 퇴장 조치할 수 있다.
- 2. 대회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예. 욕설, 부당행위, 비매너) 등으로 대회 분위기를 손상하거나 상대 선수를 자극하는 행위는 현장 심판단의 판단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 (부정행위)

- 1. 경기 진행 중 규정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운영사무국 내부 심의를 거쳐 해당인에 대해 실격 조치할 수 있다.
- 2. 승부조작과 관련해 의논이 진전된 상태라도 해당 경기 시작 직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보한 선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 3. 승부조작과 관련된 신고사항은 신고 당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사전에 승부조작을 논의하거나 실제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시도했을 경우 운영위원회 내부 심의를 거쳐 해당인에 대해 실격 조치 및 총학생회 주관 타 대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제23조 (징계)

대회 규정 위반 및 경기 진행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항에 대해 현장 심판단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테크니컬 파울 또는 경고 또는 해당 경기를 몰수패 처리할 수 있다. 테크니컬 파울과 경고는 현장 심판의 재량이며, 몰수패 처리는 현장 심판단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때 몰수패는 20:0을 기준으로한다.

- 1) 욕설, 부당 행위, 비매너 등으로 대회 분위기를 손상시키거나 상대 선수를 자극할 시
- 2) 현장 심판의 경기 진행 절차 또는 지시에 불응할 시
- 3) 대한민국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를 시 (예. 폭력 등)
- 4) 스포츠맨쉽에 위배되거나 원활한 대회 진행을 방해할 시
- 5) '제16조 (이의 제기)'에 명시되어 있는 인원 외 인원이 심판의 판정에 항의할 시
- 6) 엔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자가 경기에 참여하거나 등번호가 엔트리와 일치하지 않을 시
 - 절반 이상의 인원이 엔트리와 등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몰수패 처리
 - 절반 미만의 인원이 엔트리와 등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테크니컬 파울 및 선수 퇴장 처리, 등번호 불일치 인원 수에 해당하는 만큼 상대팀에게 자유투 부여
- 7) 경기 참여 가능 인원이 2명 미만이 될시
- 8) 기타 현장 심판단 회의를 거쳐 대회 운영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할 시
- 9) 제8조 제2항과 같이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